

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를 파수꾼

# 2024. 12. 9. 보도자료

공보관실 02)708-3411 / 팩스 02)766-7757



## 제 목 : 12월 변론 안내

- 헌법재판소는 오는 12. 10.(화) 14: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사건번호 및 사건명	청구인 (대리인)	피청구인 (대리인)	비고
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	중앙선거관리 위원회 (법무법인(유한) 동인 외 1)	감사원 (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한결)	

붙임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. 끝

# 보도자료

## 감사원의 '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'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[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]

### [ 공개 변론 ]

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.

이 사건은, 피청구인 감사원이 2023. 6. 1.부터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'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'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,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,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.



2024. 12. 9.

헌법재판소 공보관실

## ■ 사건개요

- 2023. 5. 10.경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·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. 청구인은 2023. 5. 31. (자체) 특별감사 결과 사무총장·사무차장 등 4인에 대하여 자녀의 경력경쟁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수사의뢰를 할 것이며, 재발방지를 위한 경력경쟁채용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- 피청구인 감사원은 2023. 5. 31. 감사위원회에서 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’를 감사사항에 추가하는 의결을 하고, 2023. 6. 1. 청구인에게 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27조 등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.
- 청구인은 2023. 6. 2. 국회의 국정조사,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나, 청구인은 감사원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.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, 청구인이 감사원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고, 청구인의 감사거부 및 방해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.
- 청구인은 2023. 6. 9.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녀채용특혜의혹에 관하여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감사를 수용할 것이나, 피청구인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- 그 후 청구인은 위 직무감찰이 계속 중이던 2023. 7. 28. 피청구인이 2023. 6. 1.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,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.

## ■ 심판대상

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. 6. 1.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’에 관한 직무감찰(이하 ‘이 사건 감사’라 한다)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.

## □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 요지

- 피청구인이 행하는 감사는 일반적으로 징계요구, 기관경고 등 처분으로 이어져 피감기관의 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.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사는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청구인의 독립적 업무수행권한 내지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.
- 청구인의 헌법상 지위 및 선거사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, 청구인에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 업무수행권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  - 헌법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한인 “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”는 공정한 선거에 의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, 청구인은 정치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, 그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 조직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.
- 헌법 제97조<sup>1)</sup> 및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<sup>2)</sup> 문언의 합리적 해석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대상인 “행정기관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  - 헌법 제97조는 피청구인에 의한 세입·세출 결산 및 회계검사대상을 “국가”로 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을 지칭하고 있는 반면, 직무감찰대상에 관하여는 특별히 “행정기관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 헌법상 행정부와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는 청구인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.
  - 또한 청구인의 사무는 선거, 국민투표, 정당의 기능이 최대한 보장되고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, 청구인이 직무감찰대상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.
  - 직무감찰 제외대상을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헌법 해석상 당연한 내용을 선언적·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, 비록 위 조항에 청구인 소속 공무

1)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·세출의 결산,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.

2) 감사원법 제24조(감찰 사항)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.

1. 「정부조직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
2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
3.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
4.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

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·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.

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“입법의 불비”에 불과하다.

- 행정부 소속형인 감사원의 구조상 피청구인에 의한 통제(직무감찰)는 본질적으로 행정의 내부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고, 어떤 권력이 그로부터 헌법상 분립된 다른 권력의 내부 문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감찰하고 징계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면 권력분립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-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,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4조 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조직 및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청구인의 독립성 내지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.

### □ 피청구인 감사원의 주장 요지

-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구인의 권한은 ‘감사권’이다. 그리고 이 사건 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한 것이고,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구인의 인사감사권과 양립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없는바,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- 청구인의 사무인 선거관리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대상인 행정·집행작용에 포함된다. 또한 직무감찰대상 여부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.
- 헌법은 피청구인의 권한으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명시하고 있고, 감사원법 제24조 및 하위 규범인 ‘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’에서 구체적인 직무감찰 사항 및 제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 이처럼 피청구인의 직무감찰대상은 “행정기관”과 “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”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다만,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일부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감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. 그러므로 청구인의 사무는 감사원 직무감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의 문언과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.
- 국가공무원법상 청구인의 인사감사권한과 피청구인의 직무감찰권한은 양립한다고 할 것인바, 청구인의 인사감사권한을 근거로 청구인의 인사사무에 대한 직무감찰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.

-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 설령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인사관리·조직운영 등 사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를 한 것이므로 위 감사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.

## □ 주요 쟁점

- 피청구인 감사원이 2023. 6. 1.부터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’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
  -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4조 등의 해석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

## □ 당사자 및 참고인

### ○ 청구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대표자 위원장 노태악

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(담당변호사 손용근, 이향은, 이기정, 정효영)

이효정

### ○ 피청구인

감사원

대표자 감사원장 최재해

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한결(담당변호사 최정현, 박성원)

### ○ 참고인(청구인 측 추천)

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

### ○ 참고인(피청구인 측 추천)

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용근